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자동갱신형)

2410.4



이 상품은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만기시에 자동갱신되며,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까지 보장) 매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및 적용기초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1-1. 반려묘 수술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 확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 내에서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반려묘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 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제4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에 추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반려묘가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 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추가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시안내〉 [「반려묘 수술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 확대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계산] 보험계약일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30일 → → | 2022년 8월 1일 2022년 8월 31일 주)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수술]

동물병원의 수의사 지격을 가진 지(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 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이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 (비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 검사)
- ④ 회사가 지급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발생한 의료비에서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보험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 서 정한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에시안내>

[반려묘 수술비(치과 및 구강질 환포함) 확대보장 계산]

- · 보험가입금액 : 반려묘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 10만원, 반려묘 수술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
 - 확대보장 200만원, 보상비율 : 70%, 자기부담금 : 2만원
- 예시1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310만원
-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보험금 : 1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310만원 10만원) × 7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 200만원
- · 041/12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290만원
-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보험금 : 1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290만원 10만원) × 7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 196만원
- ⑤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하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하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포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6.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7.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및 질병
- 8.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2.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및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묘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2.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 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3.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4.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5. 손톱의 절제(며느리발톱의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손톱깎기 등의 처치비용
- 6. 미용으로 인한 비용
- 7.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가 아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 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 부외품 등)
- 9. 목욕 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 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 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0.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합니다),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 11.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 후에 소요된 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운송비 포함)
- 12.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문제행동 교정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3.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의 발생일 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 와 동종의 비용
- 15.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6.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Ī		<용어풀이>
	배꼽허니아	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F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
	고양이	고양이 허피스바이러스 1형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성비기관지	ط ط
고양이 백혈병바이러스감염	고양이 백혈병바이러스에 감염에 의한 조혈기 질환
진존유치	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남아있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
잠복고환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증상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등록묘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미등록묘의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고증명서(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의료비 영수증 등)
 -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포함)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수의사법 제2조(정의)]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시체 검안(檢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이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시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시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시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시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기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약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시보험으로서 공제 시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미울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추가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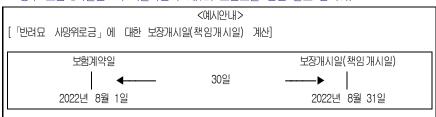
제7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반려묘 사망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6.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

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묘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제3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등록묘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미등록묘의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등)
 -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열거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무효)
- 2.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다만,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